

합정수사 및 장준규 육참총장 개입 정황 등 증거 자료 공개 브리핑

군인권센터 (2017. 4. 17. 10:30)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13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육군에서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 및 처벌할 것을 지시한 사건을 공개하였다. 사건 공개 후 단 4일 만에 피해자 법률 지원 모금을 위한 ‘무지개방패 프로젝트’에 15,860,000원(4.17 오전 9시 기준)이 모였고, 체포된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탄원에 37,857명이 동참하였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힘든 야만적인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육군은 왜곡으로 점철된 여론 선동으로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 반인권적 불법 수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책임 의식은 고사하고, 체포된 피해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망을 넓히는 등 동성애자 색출 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전의를 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사건 조사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육군의 주장이 완전한 허위 사실임을 밝힌다.

I. 사건의 성격

이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다. 항간에는 마치 피해자들이 장교의 지위를 이용하여 병사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처럼 와전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강제추행의 경우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불문하고 처벌받으며, 관련 법규도 별도로 존재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색출 당해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것이 맞다. 피해자 중 성관계를 가진 자는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를 가졌고, 부대 내 공공시설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며, 상호 지휘계통에 놓여있지도 않았다. 개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캐내 마치 성범죄를 저질러 군 기강을 무너뜨린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명백한 허위 날조다.

II. 사건 경과

올해 초, 현역 병사 1명이 간부 1명과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을 SNS상에 게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군형법’ 92조 6 추행죄 위반과 더불어 ‘정보통신망법’ 44조 7 불법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경우 군형법 상 추행죄의 위헌성과는 별개로 법률을 위반한 구체적 증거를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개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육군 중앙수사단(이하 ‘중수단’)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성애자 군인을 식별하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발생한다. 사건 피의자인 병사로 하여금 다른 동성애자 군인의 신상을 진술하게 한 것이다. 중수단은 파악한 동성애자 군인 중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 된 사람부터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중수단은 강압적 진술 요구, 반강제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 대상자로부터 동성애자 군인의 명단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식별된 동성애자 군인을 찾아가 또 다시 다른 동성애자 군인의 명단을 확보하는 식으로 수사망을 넓혀나갔다. 이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을 집요하게 추궁하여 진술한 인원을 입건해온 것이다.

그런데 육군이 발표한 반박 자료에는 이와 같은 사건 경과가 모두 생략되어 있다. 육군은 동영상 사건 관계자를 식별하여 수사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수사 대상자 전원이 한꺼번에 성관계를 가졌거나, 모두 동영상 촬영에 동참한 것처럼 애매하게 표현하여 표적수사가 아니라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음란물 유포 사건은 이후 개시된 동성애자 색출 사건에 수사 단초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별개의 사건으로 사건 당사자나 내용 상 연관성이 없다.

육군의 잘못된 해명과 KBS의 왜곡보도로 인하여 체포된 A대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병사와 동영상을 찍은 인원이라 오인되거나, 수사 대상자들이 한데 엉켜 난잡한 성관계를 가져온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으나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 이와 같이 사건이 왜곡되어 전파된 것은 KBS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책무와 품위를 망각하고 육군이 건네준 내용을 앵무새처럼 받아 적은 탓이 크다. KBS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Ⅲ. 동성애자 색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육군은 KBS 보도에서 이 수사의 목적이 동성애자를 색출하는 데 있지 않고 동성 간 성관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수단은 수사를 빙자해 동성애자를 색출하고 있다.

육군의 주장과 같이 통상의 수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황을 확인한 뒤 개시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통상의 수사 방식을 벗어나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는 마치 2차 대전 당시 나치 게슈타포가 유대계 동성애자를 추적해 체포한 방식과 흡사하다.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1932호)은 제254조에서 지휘관 등의 적극적인 동성애자 식별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육군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중수단은 함정 수사, 압수수색 영장 불법 집행 등 불법 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성애자 색출에 열을 올렸다.

(1) 동성애자로 유추되는 카톡 내용을 단초로 수사를 개시한 예

D하사는 E중위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여 얻은 정보에 군인과 연애를 했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수사 대상자가 되었다.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없었음에도 동성과 연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받은 것이다.

B중사는 수사팀이 다른 피해자인 C중위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여 얻은 정보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 정보는 B중사가 C중위 등 동성애자 군인들이 모여 있는 카톡방에서 함께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카톡 내용에 B중사가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없었음에도 동성애자라는 사실만으로 수사를 개시했던 것이다.

(2) 수사 대상자의 게이 데이팅 앱을 이용한 함정 수사

수사팀이 위계를 꾸며 게이 데이팅 앱을 통해 동성애자를 색출한 경악스러운 사실도 확인되었다. 홍학교 수사관은 G중사를 수사하면서 G중사로 하여금 게이 데이팅 앱에 접속해 군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을 교사했다. [증 제1회]

G중사는 홍학교 수사관과 동석한 자리에서 지시에 따라 게이 데이팅 앱을 통해 H중위에게 “오늘 뭐하세요?” 라고 말을 걸었다. H중위가 이에 응답하자 홍학교 수사관은 G중사로 하여

금 메시지를 보내 H중위의 얼굴 사진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고, 확보된 사진을 김춘연 수사관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증 제2호] 뿐만 아니라 홍학교 수사관은 G중사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게 하여 소속 부대, 부대 위치, 군인과의 성관계 여부 등도 식별하였고, B7 (번개의 출입말, 일회성 즉석만남을 통한 성관계를 뜻함)를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게 하여 성관계까지 유도하였다. 이 때에 H중위는 성관계 제의를 거부했으나 얼굴 사진을 보내 신상이 식별되었고, 홍학교 수사관은 며칠 뒤 이를 단초로 H중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또한 홍학교 수사관은 G중사로 하여금 게이 데이팅 앱에 사진을 공개해 놓은 신원불상의 병사 사진을 확보하여 홍학교 수사관 본인 휴대폰으로 전송할 것도 지시하였다. [증 제3호]

여러 피해자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모두 휴대폰에 게이 데이팅 앱을 설치해두고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성관계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게이 데이팅 앱에 수사대상자를 잠입시켜 신원을 확보하고 성관계를 유도하여 적발하려 한 것은 명백한 함정수사이며 불법행위다.

(3) 압수수색 영장의 불법 집행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4월 11일에 A대위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압수수색 장소는 집과 사무실이였다. 그런데 수사팀은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자동차를 무단으로 수색 하여 블랙박스 등을 압수해갔다.

이러한 사실은 A대위 체포 이후 변호사가 접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홍학교 수사관은 불법집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차량에서 압수한 물품을 모두 반환하였다. 이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불법 집행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헌법 상 영장주의 위반에 해당한다.

(4) 피해자 회유, 협박, 아웃팅,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과정 상의 불법행위

수사팀은 피해자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이용해 회유, 협박하며 반복적인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

수사팀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포렌식 하기 위해 임의제출을 강요하며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하면 불편하지 않겠느냐? (임의제출에) 협조하면 도와주겠다.” 라고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포렌식이 끝나면 “포렌식 다 했으니 있는 대로 다 말해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라며 태세돌변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휴대폰 포렌식의 경우 사실상 압수수색

이나 다름없는데 영장도 없이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위반에 해당한다.

F중사에게는 “너희 부모가 알면 어떻게 되겠냐?” 며 피해자들이 아웃팅(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지향을 타인에게 폭로하는 행위)에 대하여 갖고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 협박하기도 하였다. 부대관리훈령에서는 지휘관 등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가족, 지인 등에게 성적 지향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너네들 다 내가 모니터링하고 있다. 우리가 모를 줄 아느냐?” 라며 협박하며 피의사실에 대해 자백할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수사팀은 E중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형법 제126조로 금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의 죄를 범했고, 부대관리훈령으로 금하고 있는 동성애자 아웃팅도 자행하였다. 당시 수사팀은 E중위에게 L중사와의 성관계 사실을 추궁하고 있었다. E중위가 이를 부인하자 수사팀은 그 자리에서 L중사의 지휘관에게 화상 전화를 걸었다. L중사는 수사팀에 휴대폰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 없어 지휘관에게 한 것이다. 그런데 수사팀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지휘관도 듣고 있는 가운데 화상 통화 상에 피의사실을 이야기하며 E중위와 L중사를 대질시켰다. 이는 명백한 아웃팅이며,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수사팀은 C중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C중위의 중대장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아웃팅하기도 하였다. 피의사실공표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을 받는다.

(5) 방어권 행사 방해

수사팀은 B중사를 통해 M중사가 동성애자임을 식별한 뒤 M중사를 수사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흥학교 수사관은 M중사가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자 B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까? 바보 같은 짓이지 안그래?” 라고 하였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는 건 스스로 아웃팅 당하겠다는 것 밖에 더 되냐.” 라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흥학교 수사관은 B중사를 통해 M중사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 흥학교 수사관은 B중사에게 M중사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조만간 찾아갈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다.

(6) 외부 기관 진정 방해

수사팀은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외부 기관 진정 역시 방해하고 있다. 흥학교 수사관은 수사를 마친 B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너 어디 인권위 같은 데 연락한 거 있냐?”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그런 적 없어?” 라고 하였고 B중사가 부인하자 “믿어도 되겠지? 확인해보면 나오겠지 뭐. 믿어도 되겠지?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자꾸 못 믿게 되잖아.” 라며 재차 추궁하였다. 수사팀이 인권위 등 외부 기관에 진정한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실은 도둑이 제발저리듯 수사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같이 진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IV. 육군 고등검찰부 사건 처리 지침 하달 문건을 통한 육군참모총장 지시 정황 확인

육군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처벌할 것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육군참모총장이 수사를 지시하고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육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민간의 사법체계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도록 되어있으나 군 사법체계는 다르다. 군 검찰과 헌병대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군검찰이 헌병대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때문에 이 사건 역시 중수단이 기획하여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육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이하 ‘고검’)는 3월 23일 ‘군형법상 추행죄 처리 기준 검토’ 라는 문서를 일선 부대에 하달하였다. 고검은 이 문서에서 ‘성행 또는 경위 등 죄질 불량인 경우 구속 고려’, ‘기소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불기소(기소유예) 가능’, ‘검토안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여 통일된 사건처리가 되도록 조치.’ 등의 지침을 내리고 있다. [증 제4회]

이때는 아직 사건이 군검찰로 송치되지도 않았던 시점이다. 수사 중반에 송치도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기소 지침을 하달하고 통일된 사건 처리를 주문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별개의 사건들을 하나로 엮어 처리지침을 만든 것도 이상한 일이다. 이는 모종의 지시로 고검이 사건 처리 기준을 미리 준비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육군본부 법무실에 압력을 가해 수사지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육군참모총장 밖에 없다. 설사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육군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고검이 마음대로 진행 중인 사건에 지침을 내릴 수는 없다.

V.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육군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부대관리훈령 등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1차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인권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을 공개한다. [증 제5회]

VI. 결론

군인권센터는 13일 사건 공개 이후 국민적 지탄을 받은 육군본부가 스스로의 과오를 성찰하고 수사를 중단함은 물론, 관련자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육군은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사를 진행하였고, 체포한 피해자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당초 군인권센터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가해질 불이익을 고려하여 사건의 개략만을 공개하였으나, 육군이 도리어 피해자들을 더욱 탄압하는 형국에 접어들어 부득이 사건의 구체 내용과 입수한 증거 자료를 공개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금일 공개한 문건과 사진, 녹음자료 등을 통해 육군이 발표한 반박 자료는 모두 허위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알량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사태를 모면해보려는 군 당국의 고질병이 도진 것이다. 군은 2014년 윤일병 사망사건 당시에도 군인권센터의 1차 기자회견을 온갖 거짓말로 반박하였으나,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사인이 뒤집혀 사건의 은폐, 축소 사실이 탄로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온갖 불법행위를 총동원해 동성애자 색출, 처벌할 것을 지시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헌법 상 평등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 양심의 자유 침해와 적법절차 준수의 원리, 영장주의 위반을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 아울러 전국을 누비며 불법행위와 인권침해를 자행한 수사관 홍학교, 윤대중, 최현선, 김춘연 역시 동일한 혐의로 제소한다.

재차 요구한다. 사건 공개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뉘우침 없이 엄중한 시국에 국민을 지키라고 쥐어준 칼로 부하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장 총장은 2015년 여군 성폭력 피해자 비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때에도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 결국 들통 나 망신을 산 바 있다. 본인이 직접 동성애자 색출과 처벌을 지시한 정황 증거가 모두 공개된 만큼 더 이상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장군답게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

[별첨 1] 체포 피해자 A대위 어머니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탄원 호소문

[증 제1호] 홍학교 수사관의 함정수사 교사에 따른 G중사와 H중위의 게이 데이팅 앱 상 대화 내용

[증 제2호] G중사가 홍학교 수사관에게 전송한 H중위 사진 메세지

[증 제3호] G중사가 김춘연 수사관에게 전송한 신원불상 병사 사진 메세지

[증 제4호] '군형법상 추행죄 처리 기준 검토'(육군 법무실 고등검찰부, 2017. 03. 23)

[증 제5호] 홍학교 수사관에 의한 피해자 인권 침해 녹음 파일

[별첨 1] 체포 피해자 A대위 어머니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탄원 호소문

지난 4월 13일 아침에 제 아들이 군인들에게 체포당했습니다.

점심 쫌이었을까요. 일을 보러 나가던 중에 TV 뉴스 자막에 군대에서 동성애자들을 잡아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일도 다 벌어지고 별 걸 다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들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출장을 와있었어요.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는데 목소리가 많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헌병들에게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아까 봤던 뉴스가 생각났어요. 그 땐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 다. 우리 아들이 뉴스의 주인공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정신이 없어 무슨 말을 나눴는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네요. 변호사가 와있다고, 수사 받을 거라는 이야기 정도를 들 었습니다.

저녁쯤에 변호사님께 연락을 받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문 기사도 자세히 봤습니 다. 육군참모총장이란 분이 동성애자 군인들을 다 찾아내서 벌주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더군요. 뉴스를 보면 세상이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은데 군이 왜 이 시기에 이런 일을 벌일까 싶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처럼 잡혀가진 않았지만 수사를 받은 군인들이 많다는 사 실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굴 때린 것도 아니고,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거나 성폭행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오늘은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합니다. 나쁜 짓을 한 높은 사람들이나 받는 줄 알 았던 구속영장을 받았더니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납니다. 정작 나쁜 짓 한 사람들은 구속이 잘 되지도 않는데, 대체 우리 아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감옥에까지 가워서 수사를 한단 말입 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는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문제가 문제다보니 친척들에게도 이야기를 못 하겠고, 아들은 잡혀갔다는데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한참 속앓이를 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 습니다. 녀석이 혼자 자라 외로웠던 건 아닌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 지나간 날 들이 다 생각이 나고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지 못해 잘 모르고, 갑자기 알게 된 사실에 혼란스럽긴 하지만 아들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죄가 아니라는 거, 그게 부끄러운 일 아니라는 것쯤은 압니다. 아들은 언제나 우리 부부의 자랑이었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남들처럼 많은 걸 해주진 못했지만 정말 멋지게 잘 자라주었어요. 군 복무도 정말 착실하게 해왔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힘들어하는 와중에 상

관들께서 여러모로 많이 위로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도 잘 살았구나 싶은 생각에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론 혼자 마음고생 했을 아이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디 말 할 곳도 마땅치 않았을텐데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시고 아들을 도와주시는 군인권센터가 정말 고맙습니다. 군인권센터 분들께서 하시는 피해자 지원 모금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무슨 말로 이 감사한 마음을 다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뭐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랑스런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아들을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만든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꼭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 말고도 어딘가에서 같은 고초를 겪고 있을 우리 아들들에게 제 몇 마디 말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염치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 저희 아들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 드립니다. 부디 저 뿐 아니라 상식 있는 모든 분들께서 이 어이없는 구속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보여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 수신자부담전화도 제대로 못 받고, 세 번째 전화가 걸려 올 때서야 겨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속 깊은 녀석이 엄마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변호사님께 전해 들으니 엄마가 놀랐을까봐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전해 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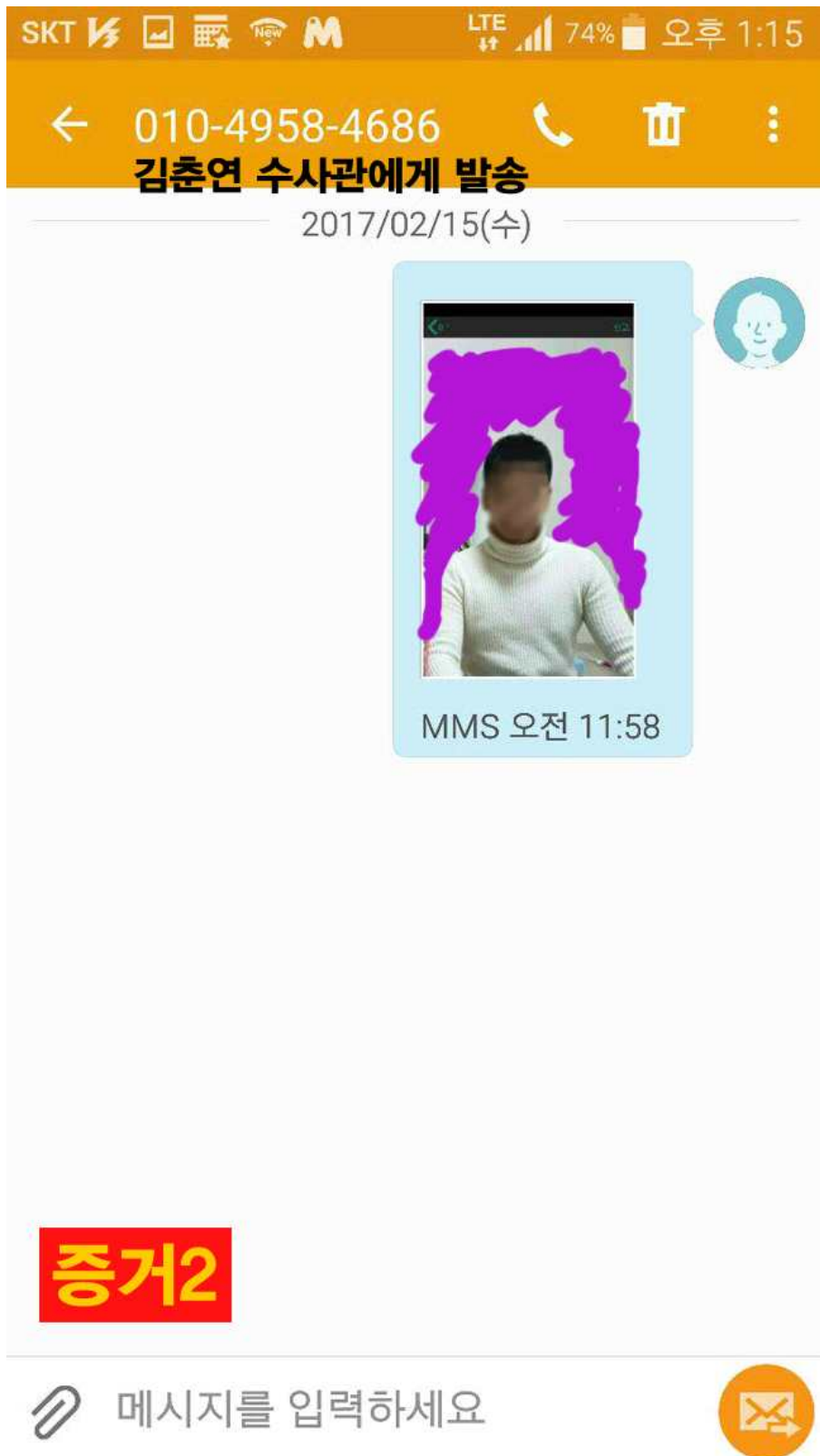
아들,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니까.
많이 사랑해. 힘내 아들.

2017년 4월 14일
A대위 어머니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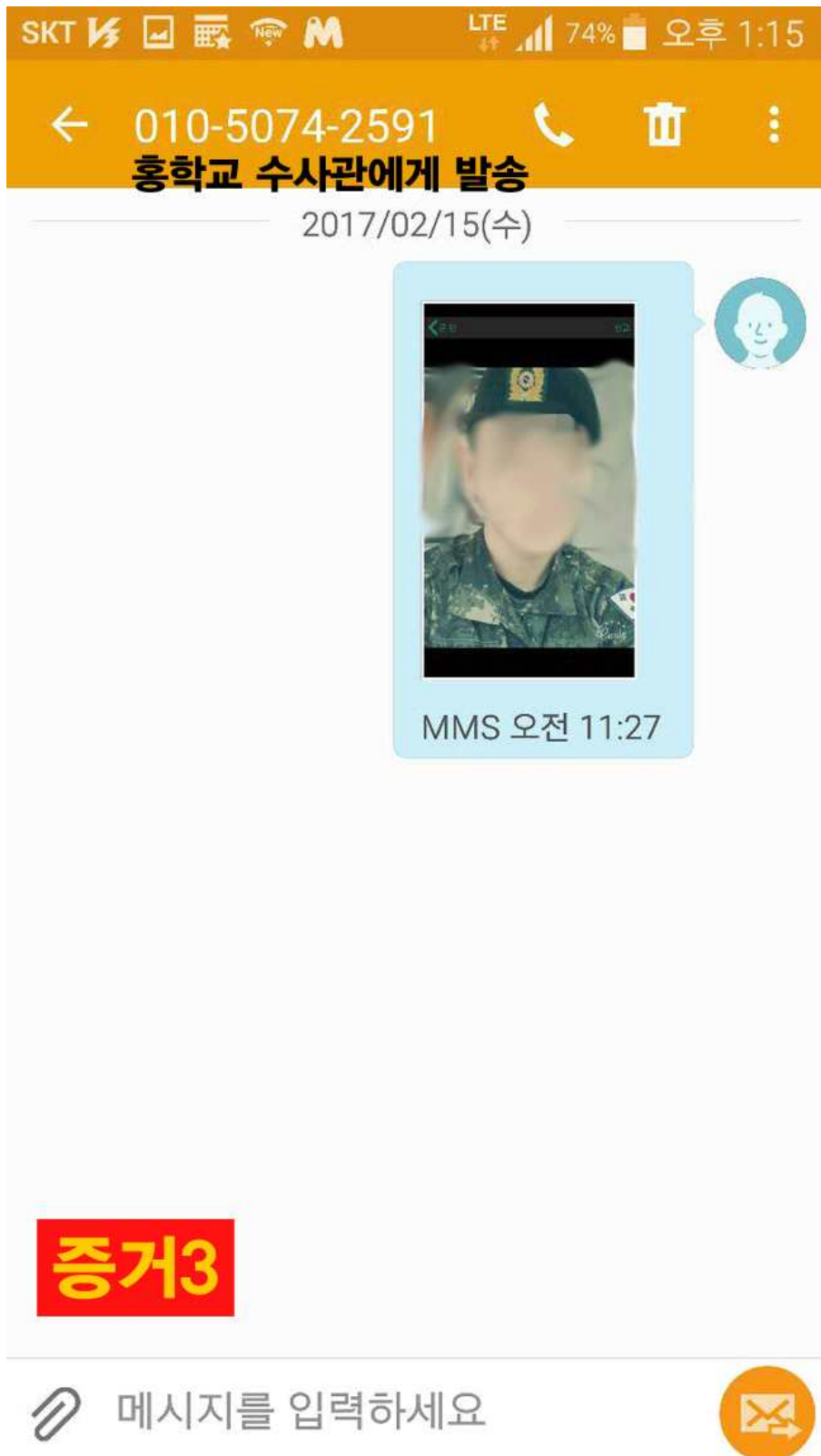
[증 제1호] 흥학교 수사관의 함정수사 교사에 따른 G중사와 H중위의 게이 데이팅 앱 상 대화 내용



[증 제2호] G중사가 흥학교 수사관에게 전송한 H중위 사진 메시지



[증 제3호] G중사가 김춘연 수사관에게 전송한 신원불상 병사 사진 메시지



군형법상 추행죄 처리 기준 검토

< 법무실 고등검찰부 ' 17. 3. 23.(목) >

- **개요** 『군형법 제92조6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군검찰 처벌 기준 검토 보고임.
- **수사 중점**
 - 장병간 추행행위 확산 방지를 위해 동성간 추행행위 엄정 처리
 - 동성에 성향은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피의자 인권 보호 주의(부대관리훈령)
 - * 수사목적이 동성애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추행행위여부에 중점 두고 수사
 - * 동성에 이유로 차별 받지 않으나, 병영내 모든 성적행위는 금지
- **구속 기소 기준**
 - 군검찰 지침 : 성행 또는 경위 등 죄질 불량외의 경우 구속 고려(육고검 제54호)
 - ◆ 구속예(2006년 ~ 2016년)
 - '17년 3사단 병장, 영내 5회, 영외 1회, 음란물유포 1회 → 구속(수사 중)
 - '08년 53사단 상병, 영내 3회 항문성교 및 구강성교 → 구속(집행유예)
 - '07년 17사단 상병과 이병, 영내(비전캠프) 1회 구강성교 → 구속(선고유예)
 - 추가 구속기준 요소
 - 재범우려가 높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 예) 영내에서 3회 이상 구강성교, 항문성교한 경우
 - 다른 성범죄와 병합된 경우 예) 유사강간, 강제추행, 음란물 유포 등
 - 지휘관계 또는 간부와 병상호간 성행위를 한 경우
 - 적극적으로 영내외에서 대상자 물색 예)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대상자 물색
 - 공개적으로 추행행위를 알리는 행위 예) 경험담을 알려 군 기강 훼손
 - 기타 건전한 군 공동생활 및 군 기강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불기소 기준**
 - 기소 원칙이나, 예외적으로는 불기소(기소유예) 가능
 - 불기소(기소유예) 판단요소
 - 재범우려가 적은 경우 예) 영내에서 추행 횟수 1회에 불과한 경우 예) 영외는 2회 이하 경우
 - 초범이고,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성적 접촉 등 재범 우려가 적은 경우
- **결론**
 - 검토안을 예하 부대에 하달하여, 통일된 사건처리가 되도록 조치//필//